

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

- 제정 : 2005. 05. 01.
- 개정 : 2007. 10. 06.
- 개정 : 2013. 03. 01.
- 개정 : 2014. 11. 01.
- 개정 : 2017. 05. 01.
- 개정 : 2018. 03. 01.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센터는 교수법 및 학습법과 관련된 이론과 방법을 연구·개발하고, 교수법 및 학습법 지원, LMS의 운영 및 지원, 이러닝(E-learning) 관련 지원 등을 함으로써 교육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내용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과정설계 및 교수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
2. 학습법 연구 개발 및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
3. LMS 운영 및 교육지원
4.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지원
5. 교수·학습 역량 향상 및 교과목·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환류시스템 운영
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위치) 센터는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캠퍼스 내에 둔다.

제5조(기구)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 1명
2. 운영위원 약간 명
3. 연구원 약간 명
4. 행정직원 약간 명
5. 필요에 따라 조교 및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,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본교 교원 중 10명 내외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
2. 센터의 예·결산 및 추가경정예산
3. 센터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
4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대학교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